

문서번호	서울장학재단-315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16.5.31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제 17 호

담 당	부 장	사무국장	이사장
5/31 김동규	최준근	대결 최준근	문미란
협조자			

I·SEOUL·U




---

## 성희롱 예방 지침 내규 제정

---

2016. 5.

서 울 장 학 재 단

# 성희롱 예방 지침 내규 제정

## I 목적

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마련하고,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성희롱 방지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왜곡된 성 인식 및 직장 문화 개선과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

## II 관련근거

- ◆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- ◆ 양성평등법 시행령 제20조(성희롱 방지조치 등)
- ◆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

## III 제정내용

- 명칭 : 성희롱 예방 지침 내규
- 주요 내용
  - 재단 내 성희롱 지침 마련
    - 내규에 따라 재단 내의 성희롱 관련 업무 시행
    - 내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

-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개설
  - 재단의 규모를 감안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 1인 지정
  - 성희롱 고충상담원 기능 및 업무
-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
  -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
- 성희롱 고충 신청 및 조사
  -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진행 및 종결 및 징계

---

## **IV 기타**

---

□ 개정절차 : 이사장 결재 후 내규 시행( '16.6.1 시행)

붙임 : 성희롱 예방 지침 내규 1부. 끝.